

의안번호	2217439
의 퇴 인	최형두의원
회 답 일	2026. 3. 31.
추 계 번호	26B1420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및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000만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 (안 제6조제1항)	2	2	2	2	2	10	2
실무위원회 (안 제6조제6항)	6	6	6	6	6	30	6
연구안보특별위원회 (안 제7조)	4	4	4	4	4	20	4
합 계	12	12	12	12	12	60	12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설치)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안보와 관련된 정부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함(제3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전략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됨(제5항)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음(제6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연구안보특별위원회 설치)	연구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 산하에 연구안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1. 연구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쳤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관한 사항 2. 연구안보 전략과 정책·제도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연구안보와 관련된 국가 간 협력 및 국제 원칙·절차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연구안보를 위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함(제2항)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연구안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특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4	안 제8조(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조사·분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13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 발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14조(국제협력 네트워크 연계 협력 강화)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15조(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및 사업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6조(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행기관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제1항)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3.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시설·지구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9	안 제18조(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의 지정 등)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외교부에 과학기술 국제협력대외직명대사(이하 “과학기술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음(제1항) 정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해외 우수 연구자를 명예과학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가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외한인과학자단체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19조(과학기술 국제협력 해외거점센터의 지정)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해외거점센터(이하 “해외거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해외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해외거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는 제3항의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1	안 제20조(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21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3.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4. 국제협력 수행기관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5. 그 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3	안 제23조(우수기관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협력 및 연구안보 역량이 뛰어난 국제협력 수행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음(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14	안 제24조(외국정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음(제1항) 1. 외국정부와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약정·양해각서 등의 체결 3.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외국 정부로의 파견 4.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재량규정
15	안 제25조(기업·대학·연구소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와 해외기관등 간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국제공동연구 기획 2. 분야별 전문 인력,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촉진 4. 연구개발성과 확산, 기술이전, 실용화 및 기술창업 지원 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제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안 제26조(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 활성화 등)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의 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국제협력주체가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국제기구에 국내 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7	안 제27조(과학기술 국제규범 및 표준)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표준의 형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8	안 제28조(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정부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국내에 진출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훈련 및 고용 3. 국내에 진출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19	안 제29조(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치)	정부는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해외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연구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 연구자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외 연구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6. 해외 연구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외 연구자 유치·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20	안 제30조(지방자치 단체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역 소재 기업·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21	안 제31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2	안 제32조(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자문, 전문인력 양성, 연구안보 국제협력 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국제협력주체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23	안 제33조(연구안보 전략 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안보 위험요소에 대한 적기 대응 등 연구안보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안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안보 관련 국내외 동향과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4	안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	•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자체 인력 및 예산으로 수립 가능하므로, 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6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설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 —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비용을 각각 추계함 — 다만,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단의 구성 인원 및 역할,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자문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는 제외함
3	안 제7조(연구안보특별위원회 설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 — 다만, 제정안은 연구안보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역할,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는 제외함
4	안 제8조(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조사·분석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조사·분석의 대상 및 내용,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13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 발굴)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 중으로, 제정안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 <th>사업개요</th> <th>2026</th> </tr> <tr> <td>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운영비 지원 (R&D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td> <td>국가R&D 사업(국제협력사업, 국제공동연구 사업 등 포함) 집행 및 성과 정보 조사·분석 및 평가</td> <td>100</td> </tr> <tr> <td>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국제협력본부 기획평가관리)</td> <td>국가R&D 사업의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 발굴 및 기획·평가·관리 등</td> <td>1,500</td> </tr> </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운영비 지원 (R&D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	국가R&D 사업(국제협력사업, 국제공동연구 사업 등 포함) 집행 및 성과 정보 조사·분석 및 평가	100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국제협력본부 기획평가관리)	국가R&D 사업의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 발굴 및 기획·평가·관리 등	1,500
			사업명	사업개요	20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운영비 지원 (R&D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	국가R&D 사업(국제협력사업, 국제공동연구 사업 등 포함) 집행 및 성과 정보 조사·분석 및 평가	100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국제협력본부 기획평가관리)	국가R&D 사업의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 발굴 및 기획·평가·관리 등	1,5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14조(국제협력 네트워크 연계 협력 강화)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 중으로, 제정안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국가간협력 기반조성</td><td>국가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협력센터 및 협력활동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대학 연구안보센터·연구안보 정책지원센터 운영 등</td><td>50,934</td></tr><tr><td>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 강화</td><td>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발전시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래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td><td>2,250</td></tr><tr><td>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td><td>국내·해외 Top-tier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플랫폼' 구축 등</td><td>30,100</td></tr><tr><td>산업기술 국제협력</td><td>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등 전략적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리더십 확보 및 세계 시장 진출 지원</td><td>232,178</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6	국가간협력 기반조성	국가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협력센터 및 협력활동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대학 연구안보센터·연구안보 정책지원센터 운영 등	50,934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 강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발전시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래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	2,250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국내·해외 Top-tier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플랫폼' 구축 등	30,100	산업기술 국제협력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등 전략적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리더십 확보 및 세계 시장 진출 지원	232,178
사업명	사업개요			2026														
국가간협력 기반조성	국가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협력센터 및 협력활동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대학 연구안보센터·연구안보 정책지원센터 운영 등			50,934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 강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발전시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래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			2,250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국내·해외 Top-tier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플랫폼' 구축 등			30,100														
산업기술 국제협력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등 전략적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리더십 확보 및 세계 시장 진출 지원			232,178														
7	안 제21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8	안 제24조(외국정부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																	
9	안 제25조(기업·대학·연구소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10	안 제27조(과학기술 국제규범 및 표준)																	
11	안 제32조(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15조(과학기술국제협력 진흥원의 설립)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 경비를 출연·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의 조직 및 인력 규모, 건립 위치 및 방식, 수행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3	안 제16조(과학기술 국제협 력혁신 허브)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를 지정·운영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혁신 허브의 지정 지역, 운영 비용의 산출,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4	안 제18조(과학기술국제협력 대사의 지정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외교부에 과학기술국제협력대의 직명대사를 두고, 해외 우수 연구자를 명예과학관으로 지정·지원하며, 재외동포가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등을 재외한인과학자단체로 지정·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명예과학관 및 재외한인과학자단체의 지정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과학기술국제협력대의 직명대사의 임명·위촉 방식 및 신분, 명예과학관 및 재외한인과학자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5	안 제19조(과학기술 국제협력 해외거점센터의 지정)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 중으로, 제정안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해외IT지원 센터운영</td><td>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 전략지역에 거점 센터를 운영하여 현지 마케팅, 기술·비즈니스 컨설팅 등 ICT 분야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td><td>6,502</td></tr><tr><td>국가간협력 기반조성</td><td>국가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협력센터 및 협력활동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td><td>50,934</td></tr><tr><td>산업기술 국제협력</td><td>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등 전략적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리더십 확보 및 세계 시장 진출 지원 - 해외기술협력거점 운영 등</td><td>232,178</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6	해외IT지원 센터운영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 전략지역에 거점 센터를 운영하여 현지 마케팅, 기술·비즈니스 컨설팅 등 ICT 분야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6,502	국가간협력 기반조성	국가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협력센터 및 협력활동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50,934	산업기술 국제협력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등 전략적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리더십 확보 및 세계 시장 진출 지원 - 해외기술협력거점 운영 등	232,178
			사업명	사업개요	2026										
			해외IT지원 센터운영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 전략지역에 거점 센터를 운영하여 현지 마케팅, 기술·비즈니스 컨설팅 등 ICT 분야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6,502										
			국가간협력 기반조성	국가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협력센터 및 협력활동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50,934										
산업기술 국제협력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등 전략적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리더십 확보 및 세계 시장 진출 지원 - 해외기술협력거점 운영 등	232,17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16	안 제20조(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플랫폼의 기능, 구축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7	안 제23조(우수기관 인증)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연구안보 역량이 뛰어난 국제협력 수행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국제협력 수행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인증을 받은 기관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 기관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8	안 제26조(다자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 활성화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 중으로, 제정안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과학기술 국제기구 부담금</td><td>OECDGSF, GBIF 등 과학기술 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부담금 납부</td><td>5,747</td></tr><tr><td>국제기구부담금 (정보화-ODA)</td><td>ITU, APT, AIBD 등 정보화 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부담금 납부</td><td>5,286</td></tr><tr><td>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부담금 (ODA)</td><td>UNDP, UN ESCAP APCTT 등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부담금 납부</td><td>430</td></tr><tr><td>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분야 해외진출지원 (정보화)</td><td>주요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 등과 공동으로 협력(수원)국 대상으로 ICT 분야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우리 기업과 함께 기술지원 수행</td><td>194</td></tr><tr><td>UN ESCAP ICT 개발센터 지원 (정보화)</td><td>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 납부</td><td>971</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6	과학기술 국제기구 부담금	OECDGSF, GBIF 등 과학기술 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부담금 납부	5,747	국제기구부담금 (정보화-ODA)	ITU, APT, AIBD 등 정보화 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부담금 납부	5,286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부담금 (ODA)	UNDP, UN ESCAP APCTT 등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부담금 납부	430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분야 해외진출지원 (정보화)	주요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 등과 공동으로 협력(수원)국 대상으로 ICT 분야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우리 기업과 함께 기술지원 수행	194	UN ESCAP ICT 개발센터 지원 (정보화)	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 납부	971
사업명	사업개요	2026																			
과학기술 국제기구 부담금	OECDGSF, GBIF 등 과학기술 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부담금 납부	5,747																			
국제기구부담금 (정보화-ODA)	ITU, APT, AIBD 등 정보화 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부담금 납부	5,286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부담금 (ODA)	UNDP, UN ESCAP APCTT 등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부담금 납부	430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분야 해외진출지원 (정보화)	주요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 등과 공동으로 협력(수원)국 대상으로 ICT 분야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우리 기업과 함께 기술지원 수행	194																			
UN ESCAP ICT 개발센터 지원 (정보화)	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 납부	971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9	안 제28조(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 중으로, 제정안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6</th></tr><tr><td>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td><td>국내·해외 Top-tier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플랫폼’ 구축 등</td><td>30,100</td></tr><tr><td>인재활용 확산지원사업 (글로벌인재 교류 활용)</td><td>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우수 연구자 교류지원, 해외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등</td><td>65,169</td></tr><tr><td>4개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td><td>국내외 우수 박사후 연구원 지원 등</td><td>105,000</td></tr><tr><td>해외인재 유치사업</td><td>첨단제조 등 산업분야 특화 최고급 인재 유치 지원</td><td>3,448</td></tr><tr><td>최고급 AI해외 인재 유치지원</td><td>AI 분야 특화 최고급 인재 유치 지원</td><td>10,000</td></tr></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6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국내·해외 Top-tier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플랫폼’ 구축 등	30,100	인재활용 확산지원사업 (글로벌인재 교류 활용)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우수 연구자 교류지원, 해외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등	65,169	4개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우수 박사후 연구원 지원 등	105,000	해외인재 유치사업	첨단제조 등 산업분야 특화 최고급 인재 유치 지원	3,448	최고급 AI해외 인재 유치지원	AI 분야 특화 최고급 인재 유치 지원	10,000
사업명	사업개요		2026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국내·해외 Top-tier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플랫폼’ 구축 등		30,100																		
인재활용 확산지원사업 (글로벌인재 교류 활용)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우수 연구자 교류지원, 해외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등		65,169																		
4개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우수 박사후 연구원 지원 등		105,000																		
해외인재 유치사업	첨단제조 등 산업분야 특화 최고급 인재 유치 지원		3,448																		
최고급 AI해외 인재 유치지원	AI 분야 특화 최고급 인재 유치 지원	10,000																			
20	안 제29조(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치)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1	안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소재 기업·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 협의체 참여 기업 등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협의체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22	안 제31조(포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포상의 기준, 포상 대상자의 수, 포상의 방식 및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23	안 제33조(연구안보 전략 수립 등)	-	•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구안보 전략 수립 등은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자체 인력 및 예산으로 수행 가능하므로, 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4	안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제정안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탁기관의 인력 및 경비 등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안 제6조제1항)

- (위원회 구성) 제정안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9명, 비상임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 제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의 위원 신분 및 구성 인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1명, 상임위원 9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비상임위원 10명(민간 전문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 구성(안)

구 분	위원 수	위원 신분
위원장	1명	국무총리(제정안에 명시)
상임위원	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비상임위원	10명	관련 단체, 학계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민간 전문가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 개최 수)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함

- (비상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¹⁾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000만원(연평균 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10	10	10	10	10	-	-
회의개최 횟수(B, 회)	1	1	1	1	1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2	2	2	2	2	10	2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실무위원회(안 제6조제6항)

- (위원회 구성)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9명, 비상임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의 위원 신분 및 구성 인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명, 상임위원 9명(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임위원 10명(민간 전문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표 4] 실무위원회 구성(안)

구 분	위원 수	위원 신분
위원장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상임위원	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임위원	10명	관련 단체, 학계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민간 전문가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 개최 수)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무위원회 회의를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함
- (비상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¹⁾
 -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000만원(연평균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실무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10	10	10	10	10	—	—
회의개최 횟수(B, 회)	3	3	3	3	3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6	6	6	6	6	30	6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연구안보특별위원회(안 제7조)

- (위원회 구성)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에 두는 연구안보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연구안보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의 위원 신분 및 구성 인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안보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명, 상임위원 4명(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임위원 10명(민간 전문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표 6] 연구안보특별위원회 구성(안)

구 분	위원 수	위원 신분
위원장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정안에 명시)
상임위원	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비상임위원	10명	관련 단체, 학계 등 연구안보 관련 민간 전문가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 개최 수)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안보특별위원회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함
- (비상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¹⁾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에 연구안보특별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000만원(연평균 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연구안보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10	10	10	10	10	—	—
회의개최 횟수(B, 회)	2	2	2	2	2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4	4	4	4	4	20	4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제정안 관련 현행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2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연구운영비 지원 (R&D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	- (목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 등 주요사업 지원 - (주요내용) 국가R&D 사업(국제협력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포함) 집행 및 성과 정보 조사·분석 및 평가	100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국제협력본부 기획평가관리)	- (목적)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 등 주요사업 지원 - (주요내용) 국가R&D 사업의 국제협력 연구개발 수요 발굴 및 기획·평가·관리 등	1,500
	국가간협력 기반조성	- (목적) 국가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협력센터 및 협력활동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 (주요내용) • (공동연구) 정상, 장·차관 등 고위급 회담 합의에 따라 해외 상대국과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 수행 • (인력교류) 국외 연구자와의 장·단기 교류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연구자 네트워킹 확대 및 공동연구 추진 기반 조성 • (협력센터) 해외 과학기술협력의 거점으로 해외 현지 국가와 국내 산·학·연과의 해외 협력활동 지원 등 • (협력활동) APEC, ASEAN, OECD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 및 한반도 과학기술 협력사업 수행	50,934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 강화	- (목적)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발전시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래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 - (주요내용) 기조성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발전시키고자 중규모 국제공동연구를 후속 지원하여 기초·응용 단계 R&D 협력 강화 *지원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민간주도 기술혁신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등)를 제외한 8대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	2,250
	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 (목적) 국내·해외 Top-tier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플랫폼' 구축 등 - (주요내용)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선진국 및 개도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초·원천 기술 및 우수인력 확보 지원 •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국내·해외 Top-tier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플랫폼' 구축	30,100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26)
	해외IT지원센터 운영	-(목적)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 전략지역에 거점 센터를 운영하여 현지 마케팅, 기술·비즈니스 컨설팅 등 ICT 분야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주요내용) 주요 수출 전략지역*에 거점 센터를 운영하여, ICT 중소·중견기업 대상 초기 현지 정착에 필요한 입주공간 제공 및 분야별(법인 설립, 회계 등) 자문서비스 제공 등 현지화 지원 *6개국 7개소: 미국(실리콘밸리),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중동(UAE)	6,502
	국가간협력기반 조성	-(목적) 국가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협력센터 및 협력활동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주요내용) • (공동연구) 정상, 장·차관 등 고위급 회담 합의에 따라 해외 상대국과 공동 관심분야에대한 국제 공동연구 수행 • (인력교류) 국외 연구자와의 장·단기 교류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연구자 네트워킹 확대 및 공동연구 추진 기반 조성 • (협력센터) 해외 과학기술협력의 거점으로 해외 현지 국가와 국내 산·학·연과의 해외 협력활동 지원 등 • (협력활동) APEC, ASEAN, OECD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 및 한반도 과학기술 협력사업 수행	50,934
	과학기술 국제기구 부담금	-(주요내용) OECD GSF, GBIF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부담금 납부	5,747
	국제기구부담금 (정보화·ODA)	-(주요내용) ITU, APT, AIBD 등 정보화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부담금 납부	5,286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부담금(ODA)	-(주요내용) UNDP, UNESCAP APCTT 등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부담금 납부	430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분야 해외진출지원 (정보화)	-(목적) 주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과 공동으로 협력(수원)국 대상으로 ICT 분야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우리 기업과 함께 기술지원 수행 -(주요내용) 국제기구 협력 ICT 기술지원에 우리 기업을 참여시켜 추후 기업의 국제기구 후속 사업(실증, 구축) 및 해외 조달 시장(ODA, EDCF 등) 진출 지원	194
	UN ESCAP ICT 개발센터 지원 (정보화)	-(주요내용) 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 운영을 위한 국제 부담금 납부 * APCICT: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회원국간 정보 격차 해소 및 인력양성을 위해 설립('06.6월 개소, 인천 송도) 된 UN ESCAP 산하 ICT 전문교육기관	971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26)
	인재활용 확산지원사업 (글로벌인재 교류 활용)	- (목적)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우수연구자 교류지원, 해외연구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등 - (주요내용)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우수연구자교류지원) 해외 주요국과 국내 연구자 간 교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핵심기술 선제적 확보, 연구인력 양성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 (해외연구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해외 인재가 대우받는 밀착형 연구·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수 외국인 연구자·유학생의 국내 정착 및 활용 강화	65,169
	4개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 (목적) 국내외 우수 박사후 연구원 지원 등 - (주요내용) 국내외 우수 박사후 연구원이 출연(연), 일반대학에서 겸직하게끔 하고, 출연(연) 전략연구사업(ISD) 연계형 연구단을 선발하여 학-연 협력 강화	105,000
	최고급 AI해외 인재 유치지원	- (목적) AI 분야 특화 최고급 인재 유치 지원 - (주요내용) 도전적 AI R&D 프로젝트를 주도할 해외 AI 우수연구자 유치 지원	10,000
산업통상부	산업기술 국제협력	- (목적)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정보 교류 등 전략적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리더십 확보 및 세계 시장 진출 지원 - (주요내용) • (국제공동기술개발) 양자협력국과 중대형 프로그램 본격화 및 다자협력 플랫폼 내 위상 강화에 따른 우리주도의 전략적 분야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안정적 운영 • (국제협력기반구축) 기업의 해외 파트너 발굴, 협력수요 확보, 연구기획,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협력기반 지속 마련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초격차 급소기술 및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연구기관에 협력센터 추가 설치 및 이를 활용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R&D 지원 •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R&D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기반 및 혁신역량 부족으로 자체개발이 어려운 첨단 선도기술의 유입 및 국내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고도화	232,178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26)
	해외인재 유치사업	－ (목적) 첨단제조 등 산업분야 특화 최고급 인재 유치 지원 － (주요내용) • (첨단분야우수인재유치)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기업 및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홍보－채용－정착에 이르는 해외인재 유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 • (육성형해외전문기술인력유치) 국내기업 전문기술인력 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 중간 중소기업 대상으로 검증된 인력 공급을 지원	3,44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